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검토보고서

I. 제안자 및 제출경과

- 제안자 : 이주수 의원 외 10인
- 제출일 : 2009. 1. 21
- 위원회 회부일 : 2009. 1. 29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해외에 불법으로 반출된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의 되찾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2008년 12월 15일자로 구성하였음.
- 동 위원회는 2009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의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은제 라마탑형 사리구」와 컬럼비아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자경전진작장례의궤」, 「진찬의궤(순조29년작)」, 「진찬의궤(고종29년작)」 등을 되찾기 위해 위원장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단체와 함께 현지를 방문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이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의 반환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해외 도처에 흩어져 있는 조선왕조의 의궤를 되찾기 위한 활동 전반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III. 변경내용

- 가. 2008년 12월 15일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변경함.
- 나. 명칭변경에 따라 활동범위는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있는 ‘의궤’반환”에서 “해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조선왕조 의궤를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변경함.

IV.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 윤 병 국)

- 본 안건은 조선왕조 의궤반환을 목적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의 명칭으로 인하여 활동범위가 마치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것만으로 한정 해석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명칭변경을 제안하였음.
- “의궤”란 조선시대 왕실과 국가의 주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일종의 행사보고서로써 기록문화의 꽃이라 여겨지는 주요 문화재인 바, 현재 일본, 영국, 미국, 카자흐스탄, 프랑스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됨.
- ※ 조선왕조의궤 국가별 반출 현황 : 「붙임1」
- 먼저,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특별위원회의 명칭과 활동범위는 구성결의시 함께 의결되는 것으로 이를 따로 분리하여 위원회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설치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현재 제안되어 있는 의안의 제목이 “명칭변경안”이라고 하더라도 특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는 “활동목적과 활동범위”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바, “명칭 변경안”의 의미는 “명칭 및 활동범위 변경안”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다수 의견)
- ※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자문결과 : 「붙임2」

- 특별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설치되어 지방의회 의사운영의 능률성,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일본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반환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조선왕조 의궤반환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이 확대되는 것이나, 활동목적이 확대되더라도 당초 “의궤반환”이라고 하는 활동목적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본 변경안의 제안취지는 타당하다고 여겨짐.
- 따라서 제출된 의안의 경우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확대된 활동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범위를 지정하는 동 결의안의 주문 중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를 “해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의궤”로 변경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문”이라 되어 있는 결의문 제목을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문”으로 변경하며, 결의문 내용 중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를 “해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의궤”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더불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음 페이지에 계속)

「붙임1」 : 조선왕실의례 국가별 (추정)반출 현황

□ 일 본 - 78건

연번	서명	소장처	연번	서명	소장처
1	철종대왕국장도감의례	궁내청 서릉부	40	존봉도감의례	궁내청 서릉부
2	철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례		41	추존시의례	
3	예릉산릉도감의례		42	존숭도감의례	
4	가례도감의례		43	상존호도감의례	
5	왕세자책례도감의례		44	철인왕후국장도감의례	
6	보인소의례		45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례	
7	철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례		46	수릉릉상사초개수도감의례	
8	예릉산릉도감의례		47	진전중건도감의례	
9	가상존호도감의례		48	영정모사도감의례	
10	묘호도감의례		49	황단증수의	
11	가상존호도감의례		50	창경궁영건도감의례	
12	신정왕후국장도감의례		51	상호도감의례	
13	신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례		52	왕세자가례도감의례	
14	수릉산릉도감의례		53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칭의례	
15	추상존호도감의례		54	원행을묘정리의례	
16	신정왕후부묘도감의례		55	국조보감감인소의례	
17	상호도감의례		56	황단종향의례	
18	명성황후국장도감의례		57	진찬의례	
19	명성황후빈전혼전도감의례		58	철종대왕부묘도감의례	
20	대례의례		59	원자아지씨안태등록	
21	영정모사도감의례		60	상호도감의례	
22	추존시의례		61	진찬의례	
23	상호도감의례		62	철인왕후부묘도감의례	
24	영희전영건도감의례		63	진찬의례	
25	증건도감의례		64	진찬의례	
26	상호도감의례		65	영정모사도감보완의례	
27	효정왕후국장도감의례		66	진찬의례	
28	효정왕후빈전혼전도감의례		67	진연의례	
29	유강원원소도감의례		68	진연의례	
30	순명비빈전혼전도감의례		69	진연의례	
31	순명비국장도감의례		70	진연의례	
32	경릉산릉도감의례		71	선원보락수정의례	
33	홍릉석의중수도감의례		72	선원보락수정의례	
34	효정왕후부묘도감의례		73	자경진작정례의례	
35	경운궁중수도감의례		74	신축진찬의례	
36	황태자가례도감의례		75	화성성역의례	
37	추봉책봉의례		76	진작의례	
38	중화전영건도감의례		77	화성성역의례	
39	추봉황후진봉황후의례		78	진작의례	

□ 미 국 - 10건

연번	서명	소장처	연번	서명	소장처
1	진찬의궤	버클리대	4	화성성역의궤	버클리대
2	진연의궤		5	자경전진작정례의궤	
3	진연의궤		6	진작의궤	
7	원행을묘정리의궤	버클리대	9	자경전진작정례의궤	컬럼비아대
8	진찬의궤	컬럼비아대	10	진찬의궤	

□ 영 국 - 4건

연번	서명	소장처	연번	서명	소장처
1	원행을묘정리의궤	대영도서관	3	진작의궤	대영도서관
2	진작의궤		4	해경궁기사진표리진찬의궤	

□ 카자흐스탄 - 3건

연번	서명	소장처	연번	서명	소장처
1	자경전진작정례의궤	국립도서관	3	진작의궤	국립도서관
2	진작의궤				

□ 프랑스 - 191건

연번	서명	연번	서명	소장처
1	강화부외규장각본안책보보략어제어필 급장치서적형지안	32	단의빈혼궁도감의궤	파리 국립도서관
2	단종정순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	33	명릉양릉개수도감의궤	
3	삼전양궁추상급가상존호도감의궤	34	명성왕후국장도감이방의궤	
4	숙종인경인현인원후가상존호도감의궤	35	명성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5	순조비순원후가상존호도감의궤	36	명성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6	인원왕후선의왕후가상존호존송도감도청의궤	37	명성왕후송릉산릉도감의궤	
7	인원왕후육존호존송도감도청의궤	38	명성왕후존송도감도청의궤	
8	인조대왕인렬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39	목릉천장시산릉도감의궤	
9	효종인선후중궁전책례도감도청의궤	40	목릉휘릉혜릉표석영건청의궤	
10	희릉대릉효릉강릉장릉표석영건청의궤	41	문조신정후가례도감의궤	
11	건릉천봉도감의궤	42	문조왕세자책례도감도청의궤	
12	건원릉정자각중수도감의궤	43	문효세자묘소도감의궤	
13	경덕궁수리소의궤	44	문효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	
14	경종국장도감도청의궤	45	문효세자수책시책례도감의궤	
15	경종단의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46	문효세자예장도감의궤	
16	경종단의후가례도감의궤	47	문희묘영건청등록	
17	경종산릉도감의궤	48	민회빈복위선시도감의궤	
18	경종선의후가례도감의궤	49	민회빈봉묘도감의궤	
19	경종선의후복위책례도감의궤	50	별삼방의궤	
20	경종세자책례도감의궤	51	복훈도감의궤	
21	경종혼전도감의궤	52	분무녹훈도감의궤	

22	공해왕후손릉수개도감의궤	53	분무녹훈도감의궤
23	금보개조도감의궤	54	사도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
24	금보개조도감청추록부의궤	55	사릉봉릉도감의궤
25	남별전중건청의궤	56	사전가상존호도감책보도식
26	녹훈도감의궤	57	서궤영건도감의궤
27	단경왕후복위부묘도감의궤	58	선의왕후국장도감도청의궤
28	단의빈묘소도감의궤	59	선의왕후빈전도감의궤
29	단의빈빈궁도감의궤	60	선의왕후산릉도감의궤
30	단의빈예장도감도청의궤	61	소현세자묘소도감의궤
31	후릉현릉평릉경릉창릉선릉정릉표석영건청의궤	62	인원왕후칠존호존숭도감의궤
63	소현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	116	인원후신정후존숭도감의궤
64	소현세자예장도감도청의궤	117	인조국장도감도청의궤
65	수릉천봉도감도청의궤	118	인조빈전혼전도감의궤
66	수은묘영건청의궤	119	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궤
67	숙종국장도감도청의궤	120	인조장렬후국장도감도청의궤
68	숙종빈전도감의궤	121	인조장렬후사존호존숭도감의궤
69	숙종산릉도감의궤	122	인조장렬후책보수개도감의궤
70	숙종세자수책시책례도감의궤	123	인조장릉천봉도감도청의궤
71	숙종인경인현인원후가상존호도감의궤	124	인현왕후국장도감도청의궤
72	숙종인경후가례도감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	125	인현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73	숙종인경후책례도감도청의궤	126	인현왕후산릉도감의궤
74	숙종인원후가례도감의궤	127	장렬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75	숙종인현후가례도감의궤	128	장렬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76	숙종혼전도감의궤	129	장렬왕후산릉도감의궤
77	순강원상시봉원도감의궤	130	장렬왕후인선왕후존숭도감의궤
78	순원후신정후존숭도감의궤	131	장릉봉릉도감의궤
79	순조대왕국장도감의궤	132	장릉수개도감의궤
80	순조순원후가례도감의궤	133	장릉천봉시산릉도감의궤
81	순조인릉산릉도감의궤	134	장조영무원묘소도감의궤
82	신덕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35	장조현경후가례도감의궤
83	어용도사도감의궤	136	정성왕후국장도감의궤
84	영녕전수개도감의궤	137	정성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85	영릉표석영건청의궤	138	정성왕후산릉도감의궤
86	영무원천봉도감도청의궤	139	정조왕세손책례도감의궤
87	영정모사도감의궤	140	정종시호도감의궤
88	영조왕세자수책시책례도감의궤	141	제릉신도비영건청의궤
89	영조정성후복위책례도감의궤	142	종묘개수도감의궤
90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143	종묘수리도감의궤
91	영조정순후육존호도감의궤	144	진전중수도감도청의궤
92	옥산대빈승후책례도감의궤	145	진전중수도감일방의궤
93	옥인조성도감도청추보부의궤	146	진종세자수책시책례도감의궤
94	온릉봉릉도감의궤	147	진종효순후가례도감의궤
95	의소묘영건청의궤	148	집상전수개도감의궤
96	의소세손묘소도감의궤	149	창덕궁수리도감의궤
97	의소세손빈궁혼궁도감의궤	150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
98	의소세손수책시책례도감의궤	151	친경의궤
99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	152	태조시호도감의궤
100	인경왕후국장도감도청의궤	153	풍양구궤유지비석수립의궤
101	인경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	154	풍정도감의궤
102	인경왕후산릉도감의궤	155	현경왕후현릉원원소도감의궤

103	인경인현인원후존승도감의궤	156	인경해빈부궁도감의궤
104	인선왕후국장도감도청의궤	157	인경해빈빈궁혼궁도감의궤
105	인선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58	인경해빈상례도감의궤
106	인선왕후산릉도감의궤	159	헌종경릉산릉도감의궤
107	인선후빈혼전도감의궤	160	헌종대왕국장도감의궤
108	인선후혼전도감의궤	161	헌종대왕빈혼전도감의궤
109	인원영종정성왕후존승도감의궤	162	헌종효현후가례도감의궤
110	인원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163	헌릉원릉소도감의궤
111	인원왕후국장도감의궤	164	헌목수빈빈궁혼궁도감의궤
112	인원왕후부묘도감도청의궤	165	헌목수빈입묘도감의궤
113	인원왕후빈혼전도감의궤	166	헌목수빈장례도감의궤
114	인원왕후산릉도감의궤	167	헌목수빈취경원릉소도감의궤
168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	181	효의왕후국장도감의궤
169	헌종명성후가례도감의궤	180	효의왕후부묘도감의궤
170	헌종명성후책례도감의궤	182	효의왕후빈혼전도감의궤
171	헌종빈혼전도감의궤	183	효종가상시호도감의궤
172	헌종산릉도감의궤	184	효종국장도감도청의궤
173	헌종세자책례도감도청의궤	185	효종부묘도감도청의궤
174	혜릉석물추배도감의궤	186	효종빈혼전도감의궤
175	효명세자예장도감의궤	187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
176	효명세자입묘도감의궤	188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
177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	189	효현왕후빈혼전도감의궤 上
178	효순현빈빈궁혼궁도감의궤	190	후릉수개도감의궤
179	효순현빈예장도감의궤	191	효의왕후건릉산릉도감의궤

「붙임2」 :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자문결과

1. 법률고문 성명 : 김용철 교수(부산대 행정학과, 숙명여대 교환교수)

질의요지 :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2009.2.3)

- 특별위원회의 명칭변경은 법적절차상 가능하고, 그 활동범위등도 달라지는 변경도 가능하며 운영위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가능함. 다만 이러한 명칭과 활동범위 등의 변경의 특정사안에 대한 새로운 명칭의 특별위구성이 원래 기존에 있던 다른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타 위원회의 활동범위등과 충돌되어 권한쟁의의 소지도 있어 신중히 접근 할 필요 있음. 끝.

2. 법률고문 성명 : 김수권 변호사

질의요지

- 서울시의회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08년 12월15일 “일본궁내청 소장의케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특별위원회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조선왕조의 의례를 되찾기 위한 활동 전반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기운영중인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키 위하여 명칭변경안을 접수시켰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바, 동 안건과 같이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인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2009.2.2)

- 관련규정에 근거한 해석

지방자치법 제56조②에서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①에서도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0조①은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모든 법령에서 특별위원회에 관해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특정한 안건이 아닌 상황변화에 따라 목적을 확대하여 별도의 안건까지 추가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특별위원회의 설치취지, 목적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례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그 목적에 관하여 명백히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의례’를 ‘원산지’로 즉각 반환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러한 취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명칭을 변경하여 일본궁내청 서릉부만이 아닌 해외에 있는 모든 의례반환을 위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설립취지,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명칭변경이 아닌 기 운영중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3. 법률고문 성명 : 박종보 교수(한양대학교 법학과)

질의요지

- 현재 설치·운영 중인 특별위원회가 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2009.2.)

- 관련 법령 및 조례

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은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조례로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0조 제1항도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가능 여부

그러므로 (1) 특별위원회의 설치 필요 여부, (2)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3)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은 본회의의 권한임.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활동 목적' 또는 '활동 범위'는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포함될 것임.

새로운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특별위원회의 명칭, 활동 목적 또는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도 본회의의 권한임. 기존의 특별위원회의 명칭, 활동 목적 또는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변경안을 가결시키면 되고, 기존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맡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변경안을 부결시키면 될 것임.

-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 변경 가능 여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 명칭과 활동범위는 함께 의결되는 것이고,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하나의 의안으로 처리하면 됨.

현재 제안되어 있는 의안의 제목이 '명칭변경안'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는 '활동 목적' 또는 '활동범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므로 현재 의안으로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임. 다만,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 제목을 “명칭 변경안”에서 “명칭 및 활동범위 변경안”이라고 수정하면 되고, 굳이 이것을 철회하고 새 의안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설치·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는 의결의 가능 여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본회의가 이미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는 의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 기간을 보장한 것이기 때문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음.

-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출의 주체

자문 요지는 “기운영중인 특별위원회가 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가 그 '명칭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의원이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고, 현재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 페이지에 계속)